

말은 다분히 역설적으로 기자는 완전한 객관적 전달자로서의 사회적 요구를 모두 수용할 수 없다는 의미이다. 그럼에도 구조적 차원의 원인이 아닌 행위차원의 오보 원인에 대해서는 오보를 줄이기 위한 노력을 통해 언론분쟁을 줄여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

언론분쟁을 일으키는 오보의 유형을 취재관행의 관점에서 보면, 기사의 사실이 허위인 경우, 사실은 맞지만 공표해서 안 될 사실을 공표한 경우, 사실도 맞고 공표해도 되는 사실이지만 표현이 잘못된 경우의 3유형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첫 번째 경우는 기자가 노력해도 사실 확인이 안 되는 사안이 종종 있기 때문에 행위차원의 노력으로 완전히 극복하기 어렵다. 하지만 피의사실의 공표나 사생활 관련 사실의 공표가 대부분인 두 번째 경우는 기자가 '법의 테두리'를 정확히 알고 노력하면 행위 차원에서 극복이 가능하다. 주로 제목의 과장이나 해석상의 과도한 주관개입의 형태로 나타나는 세 번째의 경우는 기초적인 선정성에 대한 최소한의 자제 노력과 언론윤리에 대한 지식만 있어도 근절이 가능한 경우이다.

행위차원의 오보 원인을 줄이려면 먼저 허용되는 언론자유와 법적 테두리를 정확하게 인식할 필요가 있고 나아가 언론윤리에 대한 관심을 가져야 한다. 이런 생각에서 다음은 언론중재위원회에 조정 신청된 사건과 언론소송 사건에 나타나는 언론분쟁의 쟁점을 통해 '법의 테두리'를 제시하고, 이를 토대로 취재관행에서 보완되어야 할 요소가 무엇인지 알아보려고 한다.

### Ⅲ. 언론분쟁의 유형별 쟁점과 취재관행의 문제점

#### 1. 피해구제 제도로서의 언론중재제도

언론보도로 인한 피해의 구제방법은 나라마다 다르다. 한국은 민·형사 소송과 함께 언론중재위원회에 조정 및 중재를 신청할 수 있다. 언론중재위원회는 법원이 아닌 법정 기구에 의해 언론분쟁의 해결을 추구하는 한국의 독특한 제도이다. 언론으로 피해를 입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언론중재위원회에 정정보도, 반론보도, 추후보도, 손해배상 등의 조정과 중재를 신청할 수 있다. 이 과정에서 피해구제가 되지 않는 경우는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는 방법이 있다. 언론중재제도의 취지는 복잡한 소송절차를 겪지 않고도 언론분쟁을 해결하는 방법을 모색함으로써 언론사와 언론피해자 양자에게 모두 적절한 편의를 제공하는데 있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언론중재제도의 실효성에 대해서는 긍정적 평가와 부정적 평가가 공존한다. 긍정적 평가는 언론중재과정을 거치면서 언론피해사건이 효율적으로 해결되었기 때문에 언론피해자의 권익에 기여할 뿐만 아니라 언론중재제도의 존재가 어느 정도는 언론분쟁을 예방하기도 한다는 것이다.(양삼승, 2000) 부정적 평가는 언론중재위원회의 활동이 언론피해자의 구제를 오히려 지연시키고(김창룡, 2004 ; 장호순, 2003), 피해자를 구제하기 보다는 언론사를 보호하는 기능을 담당한다는 주장(김중서, 1994)이 있다.

하지만 부정적 견해도 언론중재위원회의 기능을 피해자 구제를 위해 활성화해야 한다는 취지에서 이루어지는 것이어서 언론중재제도 자체에 대해서는 긍정적 평가를 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지금까지의 활동의 성격과 그에 대한 평가가 어떠한 언론중재제도의 존재자체는 한국 사회의 현실에서 매우 유용하지 않나 싶다. 왜냐하면 사법제도가 활성화 되지 않아 소송의 현실적 장벽이 높고 언론사의 취재관행 역시 많은 문제점이 있어 언론분쟁이 빈발할 수밖에 없는 현실에서는 효율적인 분쟁해결의 제도적 장치에 대한 요구 또한 높아질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실제로 언론중재위원회가 처리한 조정신청사건은 2003년 724건, 2004년, 759건, 2005년 883건, 2006년 1087건, 2007년 1043건으로 대체로 가파른 증가추세를 보여 왔다. 피해구제율은 2007년 64.8%로 비교적 높게 나타났다.

## 2. 조정사건과 소송사건에 나타난 언론분쟁의 추이

언론분쟁 쟁점의 효율적 인식을 위해 먼저 조정사건과 소송사건에 나타난 개괄적인 언론분쟁의 추이를 큰 틀에서 그려보고자 한다. 2007년 조정·중재 사건 1043건과 2005년-2007년 3년간 다루어진 언론소송사건 349건을 각각 분석한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사 분석 보고서 '2007년도 조정·중재 사건 분석 보고서'와 '2005-2007년도 언론소송 판결 분석' 보고서의 내용 중 취재관행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항목들을 요약정리하면 아래와 같다.

## 1) 조정·중재 사건에 나타난 언론분쟁 추이

2007년 처리된 조정사건은 1043건으로 5년 전의 724건에 비해 높은 증가추세를 나타냈다. 하지만 이런 가파른 증가추세는 2006년-2007년 사이 44건의 감소추세를 처음으로 보였는데, 중재위원회의 분석에 따르면 이는 절대적인 청구건수의 감소라기보다는 병합청구가 감소했기 때문이다.

- 청구권별 청구건수는 정정보도 52.8%, 손해배상 33.5%, 반론보도 11.0%로 정정보도와 손해배상이 전체의 86.3%를 차지했다. 병합청구의 경우도 '정정·손배'가 232건으로 전체 병합청구건수 277건의 83.8%를 차지했다. 단독이든 병합이든 정정보도와 손해배상이 압도적이며 반론보도, 추후보도 등은 미미함을 알 수 있다.
- 신청인 유형별 건수는 개인 50.3%, 회사 16.9%, 일반단체 13.9%, 국가기관 9.7%, 지자체 및 공공단체 5.9%, 교육기관 2.3%, 종교단체 1.0% 순이다. 개인의 비율이 2005년 43.6%에서 50.3%로 크게 늘어난 반면 국가기관은 16.5%에서 9.7%로 크게 줄어든 것이 특징이다. 참여정부기간 중 정부와 언론의 불편한 관계를 반영한다고 볼 수 있겠다.
- 매체유형별 건수는 신문이 60.8%(중앙일간지 26.6%, 지역일간지 21.6%, 주간신문 12.5%), 방송 24.0%, 인터넷 신문 10.8%, 뉴스통신 2.9%, 잡지 1.0% 순이다. 신문은 2005년 69.0%에서 60.8%로 줄어든 반면 방송은 19.7%에서 24.0%로 늘어났고, 인터넷 신문은 5.4%에서 10.8%로 2배가 증가했다. 인터넷 신문의 청구건수 증가가 폭발적인 것이 특징이다. 인터넷 신문 기자들의 언론윤리법규 인식 수준이나 직업적 숙련도가 인쇄매체에 비해 크게 떨어지는 현실을 그대로 반영하는 결과로 보인다.
- 침해유형별로는 명예훼손이 91.4%로 압도적이며 초상권침해가 5.1%로 그 다음 순이다. 음성권 침해, 성명권 침해, 프라이버시 침해, 신용훼손 등은 1% 안팎으로 극히 미미하다. 초상권등 기타 인격권의 침해 유형은 '동의 없이 무단 공표' 77.3%, 동의의 범위를 벗어난 보도 20.4%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 조정대상기사의 분야는 사건사고/고발 기사가 61.8%, 정치/선거 관련 기사가 8.9%, 경제/산업 관련기사 6.5%, 교육 3.4%, 노조 3.0% 이고 나머지 분야는 매우 낮았다. 기사의 유형(방송제외)은 스트레이트기사가 75.2%, 탐사/심층/기획 기사 8.8%, 논단 및 칼럼 3.3%, 비평 2.6%, 사설 2.0%, 사진 2.1% 순이다. 방송프로그램의 장르별 청구건수는 뉴스가 62.4%, 시사고발 22.0%, 교양정보

9.6%순이고 오락프로나 스포츠는 매우 낮게 나타났다.

- 피해구제율(피해구제건수를 기각, 각하건수를 제외한 조정건수로 나눈 것)은 64.8%로 전년대비 4.2%p 상승했다. 청구권별 피해구제율은 추후보도청구가 80.8%, 반론보도 71.8%, 정정보도청구 63.7%, 손해배상청구 63.1%이다.

## 2) 언론소송 사건에 나타난 언론분쟁 추이

언론중재위원회에 접수된 조정사건이나 법원에 접수된 소송사건에 나타나는 언론분쟁의 추이는 대체로 비슷한 경향을 보이지만 몇몇 항목에서 의미 있는 차이를 보인다. 이런 차이를 중심으로 2005년-2007년 언론소송 사건 369건에 대한 중재위원회의 통계분석 결과를 요약했다.

- 청구별 소송빈도는 손해배상청구가 54.5%, 정정보도 및 손해배상청구 29.3%, 반론보도청구 5.1%, 정정보도청구 3.8% 등이었다. 조정사건의 경우 정정보도 청구가 절반을 넘는데 비해 소송의 경우는 순수 정정보도청구는 3.8%로 미미하며 대부분이 손해배상청구(병합청구포함)인 것이 특징이다. 피해정도에 대한 피해자의 보상기대치가 높은 경우 소송으로 이어진다고 볼 수 있겠다.
- 침해유형별 소송빈도는 명예훼손이 78.6%로 단연 많고 명예훼손 및 사생활 침해 5.4%, 명예훼손 및 초상권 침해 5.2%, 명예훼손/사생활침해/초상권 침해 3.3% 순으로 거의 모든 소송이 명예훼손에 대한 침해이다. 초상권침해 단독은 1.9%, 사생활 침해 단독은 0.5%에 불과하다.
- 매체유형별 소송빈도는 방송이 29.8%, 일간신문이 27.9%, 인터넷매체도 19.0%, 주간신문 10.3%, 월간지 8.1%, 뉴스통신 4.1%였다. 일간지 중에는 중앙종합일간지가 71.8%, 방송 중에는 중앙방송이 78.2%로 대부분이었다. 이러한 수치는 조정사건에 비해 방송의 비율이 높고 신문의 비율이 상대적으로 낮으며 그 중에서 지역신문의 비율이 낮은 것이 가장 큰 특징이다. 이는 영향력 있는 매체에 의한 피해가 피해범위와 정도가 클 것이기 때문에 피해구제에 대한 욕구도 그만큼 크기 때문으로 볼 수 있다. 지역신문에서 소송빈도가 낮은 것은 좁은 지역에서 여론분쟁이후의 관계를 생각해 극단적인 방식을 서로 피하려고 하는 성향과 관계가 있지 않을까 싶다.
- 보도유형별 소송빈도는 조정 사건과 큰 차이가 없다. 스트레이트의 비율이 79.8%에 이르고 방송의 경우도 뉴스, 시사고발, 교양정보 프로그램의 비율이 압도적이다.
- 재판결과는 원고 승소율(원고 일부승소 포함)은 43.4%, 원고 패소율은 56.1%로 집계됐다.

- 청구유형별 원고승소율은 반론보도가 47.8%로 가장 높고, 손해배상이 43.4%, 기사삭제 33.3%, 배포 및 방송금지 가처분이 25.0%, 정정보도가 23.4%였다. 정정보도의 원고 패소율이 75.8%로 높게 나타나는 것은 재판과정에서 상당성이 인정된 경우가 많았기 때문이고, 또한 손해배상과 병합 청구된 경우 별도의 정정보도까지 필요하지 않다고 판단된 경우도 많았다.
- 침해유형별 원고승소율은 명예훼손이 전체평균과 같은 43.4%, 명예훼손과 초상권을 동시에 침해한 경우 57.9%, 초상권 단독침해는 85.7%로 매우 높게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취재관행 중 초상권의 이용 관행에 심각한 문제가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 원고유형별 승소율은 일반인 55.9%, 공직자 51.9%, 국가기관 38.5%, 언론사는 36.0%, 종교단체는 30.0%, 공적 인물과 기업체는 26.1%, 기타일반단체 22.2% 순으로 나타났다. 원고유형에 대한 재판부의 일반적 입장은 공인과 언론사는 일반 개인에 비해 비판의 수인 범위가 넓어야 한다는 것이다.
- 매체유형별 원고승소율은 주간신문을 상대로 한 사건에서 68.4%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연합뉴스와 뉴시스 등 뉴스통신매체도 66.6%로 높다. 이어 월간지 46.7%, 인터넷매체 45.7%, 방송 44.5%, 일간신문 28.2%순이었다. 일간지의 원고승소율은 지역종합일간지 41.2%, 중앙종합일간지 25.7%, 일반경제지 25.0% 순이었다. 피고인 대상매체의 승소율이 낮을수록 그 매체의 취재관행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생각해볼 수 있다. 그런 점에서 공격적이고 비판적 내용이 적어 속성상 소송이나 패소의 비율이 낮은 경제지를 제외하면, 중앙종합일간지의 보도관행이 그나마 '법의 테두리'를 잘 준수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 3. 침해 유형으로 본 언론분쟁의 쟁점과 취재관행

언론분쟁은 언론의 자유와 인격권의 법적 보장 범위를 둘러싼 충돌이다. 그래서 언론분쟁의 쟁점은 결국은 소송사건의 판결 기준을 둘러싼 해석의 충돌로 볼 수 있다. 이러한 싸움은 일차적으로는 소송 대상 보도가 인격권 침해의 법적 구성요건이 되는지의 해석의 문제이고, 이차적으로는 인격권을 침해했다하더라도 위법성 조각사유가 되는지의 문제이다. 그래서 여기서는 인격권 침해의 유형별 법적 구성요건과 위법성 조각사유의 판단에 중요한 취재관행의 행태를 사례를 통해 알아보고자 한다.

#### 1) 명예훼손

## (1) 성립조건과 위법성 조각사유

언론보도로 인한 명예훼손이 성립하려면 피해자 특정, 구체적 사실의 적시,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내용의 세 가지 요건이 충족되어야 한다. ‘피해자 특정’은 보도내용 중 기사의 당사자가 피해자라는 사실을 밝히거나 암시하는 내용이 들어있는 경우이다. 구체적으로 성명 등 인적사항을 밝히지 않더라도 표현의 내용과 주위 사정을 종합했을 때 피해자를 지목하는 것을 알 수 있을 정도면 피해자가 특정됐다고 본다. ‘구체적 사실의 적시’는 진위 검증이 가능한 진술을 말하는 것으로 ‘사실’의 범위는 사실을 직접적으로 표현한 경우는 물론 우회적으로 암시한 경우도 포함한다.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표현’은 말 그대로 피해자의 사회적 평가를 훼손하는 내용을 말하는 것으로 가장 종합적 판단을 요구하는 대목이다. 명예훼손이 성립하려면 위 세 가지 조건이 모두 충족되어야 한다. 피해자 특정이 인정되고 구체적 사실의 적시가 있는 경우도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표현이 없으면 명예훼손은 성립하지 않는다. ‘구체적 사실의 적시’ 부분은 사실의 진위여부와 관계없다. 허위일 경우가 대체로 처벌의 강도가 높아질 뿐이다.

하지만 이러한 구성요건이 성립하더라도 “그것이 공공의 이해에 관한 사항으로 그 목적이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인 때에는 진실한 사실이라는 증명이 있거나, 그와 같은 증명이 없더라도 보도내용이 진실이라고 믿거나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대법원 2005년 7.15일 선고)에는 위법성이 없는 것으로 본다. 즉 명예훼손의 위법성 조각사유는 ‘공공의 이해에 관한 것으로 공익을 위한 보도’인 경우이고, ‘보도내용이 진실이라고 입증하거나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충분한 근거’를 입증하는 것이다. 명예훼손의 피해자가 공적기구나 언론사이거나 공적 인물인 경우 비판의 수인 범위가 넓어지기 때문에 언론자유의 제한이 완화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 (2) 분쟁의 쟁점과 취재관행

① 피해자 특정 : 언론은 익명처리 했다고 판단했지만 기사에 나타나는 다른 단서들 때문에 실질적으로 피해자가 누구인지 알아 볼 수 있게 된 경우이다. 분쟁의 쟁점은 기

사에 표시된 단서들로 피해자가 실질적으로 공표되는 효과를 갖느냐는 것이다. 여기에는 크게 세 가지 유형이 있다.

첫째, ‘김 아무개’, ‘A회사’ 등과 같이 개인이나 단체를 익명처리 했는데 기사 중의 다른 단서들 때문에 피해자 특징이 된다고 생각되는 경우이다.

둘째, ‘해당 전교조 34명’ 등과 같이 복수의 집단으로 표현했는데 기사의 내용과 당시 정황 때문에 해당 교사가 누구인지 주변사람들이 알아볼 수 있게 된 경우이다.

셋째, “검찰의 불법감청 의혹”, “경찰의 카드깡” 등 집단표시를 했을 뿐인데 기사 정황으로 보아 담당수사진이 누구인지 알아볼 수 있게 되어서 피해자 특징이 인정된 경우이다. 일반적으로 집단표시 자체만으로는 구성원의 개개인의 명예가 훼손되지 않는다고 보아 피해자 특징이 인정되지 않지만, 정황적으로 누구인지 인식할 수 있는 경우는 피해자가 인정된다.

이 세 가지 경우 중 기자가 침해를 인식하기 어려운 상황은 두 번째와 세 번째 유형이다. 개인에 대한 침해에 대해서는 주의를 기울이고 동시에 익명화 하는 관행이 어느 정도 정착돼 있지만, 피해자가 다수인 경우나 집단인 경우는 피해자가 특정되는 과정을 예측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②구체적 사실의 적시** : 이 요건은 사실의 적시인지 의견 표명인지 여부, 의견 표명이 단순한 의견개진이었는지 인신공격이었는지 여부가 판결의 중요한 근거가 된다.

- **사실적시와 의견표명** : 직접적으로 사실을 밝히지 않더라도 우회적으로 사실을 암시하면 사실의 적시로 인정된다. (검찰의 불법도청 의혹사건에서 문제의 사실은 ‘의혹’이라는 표현을 써서 의견 표명의 형식을 취했지만 원고들이 불법감청을 한 다음 그 감청 내용을 일부 공개하면서 감청사실의 존재를 은폐하려는 의심스러운 행동을 하였다는 사실을 간접적으로 적시하고 있어서 사실의 적시로 인정됐다.)
- **의견표명과 인신공격** : 단순한 의견 표명은 명예훼손의 성립조건이 안 된다. 하지만 소송이 제기되는 기사 중에는 구체적인 사실의 적시와 연결된 의견표명이 많다. 즉 사실은 맞는데 여기에 대해 의견이 피해자에 불리한 기사가 많다. 이 경우 적시된 사실이 진실이면 문제가 된 논평부분은 주관이 강하게 개입돼 있더라도 단순한 의견 표명으로 간주된다. 예컨대 “건설교통부 장관이 지나치게 고향 챙기기 인사를 하고 있다”는 부분은 앞서 제시된 인사 내용을 기초로 한 논평

인데 인사내용이 사실이고 여기에서 추론한 것으로 인정돼 의견 표명으로 간주된 경우이다. “유령조합”, “알박기식 가처분”, “몰염치가 도를 넘어섰다.”, “노골적으로 제 뺨살 불리기에만 눈독을 들이고 있는 것이다” 등의 표현도 의견개진으로 인정된 경우이다.

하지만 의견 또는 논평이 한계를 일탈하여 인신공격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의견 표명 자체로도 불법행위(모욕죄)가 될 수 있다. 오마이뉴스가 특정 개인을 향해 사용한 “분열적 정신상태”란 표현, 모 국회의원이 오마이뉴스를 비판하며 사용한 “사이비 황색언론”, “쓰레기 언론”, “김대업 언론” 등의 표현이 여기에 해당한다.

- **인용과 사실의 적시** : 제 3자의 저술이나, 강연, 인터뷰 내용 등을 기사화 하는 경우 전체 내용 중 일부만을 발췌해서 취지와 무관하게 인용해서 전체 취지를 오해할 여지가 있는 경우는 허위 사실의 전달로 인정된다. 조선일보가 “MBC 미디어 비평 프로는 위함-진중권씨 서울대 강연서 비판”이라는 제목으로 진중권의 발언 내용의 일부를 인용한 것이 허위사실로 인정됐다.

**③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표현** : 이 요건은 기사의 전체적인 내용을 종합해서 사회적 평가의 저하 여부를 판정하는 포괄적인 규정이다.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느냐 않느냐는 기자의 판단은 동시대의 통념과 상식에 대한 감각을 요구한다. “특허청 업무처리 잘못으로 국내 중소기업에게 피해가 발생했다는 보도내용은 원고인 대한민국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것”, “방송에서 원하지 않은 이혼사실이 밝혀진 것은 사회적 평가가 저하된 것”이라는 판례가 있다.

이 요건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취재관행은 피의사실 보도관행이다. 속보경쟁을 하느라 수사가 진행되는 사건에 대해 마치 범죄혐의를 받은 사실을 범행을 저지른 것처럼 단정적 어투로 보도하는 것은 원고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것으로 인정된다.

**④ 명예훼손 위법성 조각 사유** : 명예훼손의 위법성 조각 사유에서 중요한 논점은 공적 관심사를 공익을 위해 보도했느냐 여부, 보도사실이 진실이냐 여부, 진실이 아닐 경우 상당성의 인정 여부 등이다.

- **공적인물 판단기준** : 공인 여부는 언론보도에 대한 비판의 수용한도, 익명보도의 원칙의 적용, 초상권이용 여부의 기준이 되기 때문에 중요하다. 공인(公人)에 대한 통일된 개념은 없고 정황에 따라 결정한다. 판례를 보면 ‘평범한 정신과 의사’는 공인 아니다. ‘연예인 겸 기업의 대표’, ‘국회의원’, ‘청와대비서관을 지낸 법무부차관’은 공인이다.

- **보도의 공익성** : 이 항목 역시 종합적 판단의 대상이다. 공익성을 인정받은 사례로는 국회의원 선거에 입후보한 원고의 배우자가 최근 5년간 1,455,000원의 세금을 체납했다는 보도, 방송사 대표이사가 방송사를 정치적 홍보를 위해 활용하려고 한다는 문제점을 거론한 보도, 고의적으로 지방세를 체납하는 부유층 인사들을 고발하는 보도, 국회의원의 욕설보도 등이다. 공익성이 부정되는 경우 중 유의해야 할 것은 ‘피의사실 보도에서 피의자가 공적인물이라도 동종전과도 아닌 범죄경력을 보도한 경우는 공익성을 인정받지 못한다는 것’이다. 즉 공인이어도 공익적 사안과 직접 관계된 사실이 아닌 사생활을 보도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현장에서 그 경계 판단이 쉽지 않아 자주 오인되는 경우이다.
- **진실성 및 상당성** : 보도내용의 진실성 판정 원칙은 “내용전체의 취지를 살펴 볼 때 중요한 부분이 객관적 사실과 합치되면 세부에 진실과 약간의 차이가 있거나 과장된 표현이 있어도 무방하다는 것”이다. 보도내용이 진실이 아니어도 진실이라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상당성)이 있으면 위법성은 조각되는데, 상당성 판정은 기자가 진실을 알기 위한 필요한 조사의무와 확인절차를 거쳤느냐가 관건이다. 상당성 판정에서는 취재원의 공신력, 기자의 사실 확인 가능성, 실제 사실 확인 여부 등이 중요한 판단의 근거가 된다. 한국 언론의 취재관행에 의미 있다고 판단되는 상당성 판정의 세부 기준은 다음과 같다.

  - 수사기관이 배부한 보도자료를 받고 자료 내용과 동일한 내용의 기사를 작성하여 보도한 것은 상당성이 인정된다. 하지만 수사기관이 공식적으로 발표한 보도자료가 아니라 수사과정에서 나온 내부문서를 기초로 기사를 작성한 경우 상당성을 인정할 수 없다. 이 경우 내부문서에 대해 비공식적으로 내부 경찰관에게 확인했다하더라도 사실 확인을 위한 충분한 절차를 거쳤다고 볼 수 없다. 수사기관에 제출되지 않은 고소장과 원고를 고소한 당사자의 진술을 근거로 기사를 작성한 경우도 상당성이 인정되지 않는다.
  - 강연내용을 보도한 경우 취재기자가 강연내용을 메모한 정도의 조사절차는 사실 확인을 위한 충분한 절차라고 볼 수 없고, 발언의 신뢰성, 신빙성 등을 판단하는데 중요한 부분은 강연자에게 한번 확인하는 절차가 필요하다.
  - 연합뉴스의 기사를 그대로 보도했을 경우 연합뉴스가 사실 확인을 위한 절차를 거치지 않았고, 게재한 매체역시 사실 확인 노력을 하지 않았다면 게재 매체의 경우도 상당성을 인정할 수 없다.
  - 북한관련 뉴스 등과 같이 당사자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 취재원이 공신력 있는 기관이고 공식적인 절차를 거쳐 얻은 자료를 토대로 작성한 기사는 그 자체로 상당성이 인정된다.
  - 검찰간부의 제보를 받고 원고의 수위사실을 보도한 사건의 경우 제보자의 신원을 밝히지 않고, 제보내용의 진위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추가취재를 하지 않은 경우는 상당성이 인정되지 않는다.

구체적 판례에 나타난 이러한 세부기준을 보면 상당성 판정은 우선 충분한 사실 확인 노력을 했는지 여부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둘째는 공공기관의 공식적 발표냐 아니면 비공식적 채널의 제보냐가 중요한데, 후자의 경우 아무리 높은 자리의 취재원이라도 개인적 제보를 공식발표로 오인해서는 안 된다. 사실 확인 과정에서는 무엇보다 당사자 확인이 중요하다. 당사자가 부인하는 경우 반론권을 인정해서 기사에 포함시키는 것이 상당성을 인정받는 효율적인 방법이 될 수 있다.

## 2) 초상권 침해

초상권은 자신의 얼굴 또는 사회통념상 특정인임을 식별할 수 있는 신체적 특징(초상)에 관하여 합부로 촬영되어 공표되지 아니하며 광고 등에 영리적으로 이용되지 아니하는 법적 보장이라 할 수 있다. 초상권은 촬영·작성 거절권, 공표거절권, 초상영리권 등으로 구성돼 있다. 초상권 침해는 주로 동의 없이 촬영 공표되거나 동의했다라도 동의의 범위 이상 이용되는 형태로 나타나고 있다.

초상권 침해의 분쟁의 주요 쟁점은 동意的 판단 근거, 동意的 범위 규정, 공익성이 인정되는 보도의 경우 상당성을 인정받기 위한 필연성과 긴급성 여부 등이다. 판례를 통해 추론한 쟁점에 대한 판단의 중요한 세부기준은 다음과 같다.

- 원고의 모습이 모자이크 처리되고 음성변조된 경우 초상권침해를 인정할 수 없다. 모자이크 처리가 불확실해 식별의 단서를 제공하는 경우는 초상권침해가 인정된다.
- 원고의 동의는 초상권침해의 위법성 조각 사유이다. 동의 여부에 대한 판단은 당사자의 분명한 의사표시가 뒷받침돼야 하며 정황적인 근거로 묵시적 동의를 추론하는 것은 위험하다. 원고가 촬영사실을 알고도 인터뷰에 응했다는 점만으로는 묵시적 동의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원고들이 송년회에서 노래하며 춤추는 장면을 동의 없이 방영한 것은 송년회를 주최한 측의 촬영협조가 있었다 해도 묵시적 동의로 보기 어렵다. 미성년자의 초상을 사용하는 경우 친권자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 원고의 동의가 있었다하더라도 예정한 방법과 달리 방송된 경우에는 초상권 침해가 인정된다. 얼굴을 식별할 수 없도록 촬영하겠다고 하고 실제 방영에서 얼굴이 노출되면 초상권 침해가 된다.
- 공적인물의 초상 사용은 일반적으로 인정되지만, 공익적 내용이라 하더라도 공적 인물이 아닌

사람의 초상을 이용하는 경우 필연성과 긴급성이 있어야 위법성이 조각된다.

이러한 기준들 중에서 가장 논란의 소지가 많고 기자들의 인식 수준이 낮은 부분은 묵시적 동의 여부와 공익적 내용에서 긴급성과 필연성이라 할 수 있다. 늘 시간에 쫓기는 기자들의 입장에서는 자신들의 편의를 위해 묵시적 동의와 긴급성 및 필연성에 대해 관대한 해석을 하기 십상이기 때문이다. 필연성과 긴급성은 반드시 그 사람의 초상을 사용해야 할 이유인데, 사실 웬만한 보도 내용은 초상을 모자이크 처리해도 내용 전달은 된다. 다만 현실감과 박진감이 떨어질 뿐이다. 현실감과 박진감은 공익성과 관계되기보다 상업성과 관계되는 요소이다. 따라서 상업적 욕구를 절제하면 충분히 분쟁을 줄일 수 있는 부분이다.

#### IV. 맺는 말

언론분쟁은 산업적 속성 때문에 비롯되는 측면이 있지만, 그보다는 기자들의 행위 차원에서 비롯되며, 노력을 통해 상당 수준까지 줄일 수 있다. 그러기 위해서는 언론분쟁을 일으키는 취재관행의 구조적 성격에 대한 기자들의 자각과 성찰이 요구된다. 이런 관점에서 지금까지 논의한 내용의 핵심을 취재관행의 문제로 돌려 정리하면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다.

첫째, 언론분쟁의 대부분은 명예훼손 사안이며, 주로 사건사고, 탐사보도, 폭로성 고발기사 등에 집중된다. 이 분야의 기사가 주로 공격저널리즘의 형식을 띠기 때문에 피해발생 가능성이 높은 영역인데, 기자들은 연조가 비교적 낮은 기자로 취재경험과 전문성이 부족한 기자들이다. 인력배치에서부터 언론분쟁의 소지가 상존한다고 볼 수 있다.

둘째, 허위 사실의 보도는 취재원에 지나치게 의존해서 일방향으로 사물을 재단하고 반대 입장에 대한 취재를 통한 사실 확인 절차를 소홀하기 때문에 비롯된다. 분쟁을 줄이기 위해서는 허위보도를 줄여야 하는데, 그것이 구조적으로 힘들면 상당성이라도 인정받을 수 있는 노력을 해야 한다. 그런데 이 부분이 현저하게 취약하다.

셋째, 상당수 언론분쟁이 제목을 비롯한 기사 본문 중의 과장된 표현 때문에 비롯된